

복지가 아닌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어떻게 해야 시행할 수 있을까?

김태호 발행인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이 스탠딩 지음, 안효상 옮김 | 2018년 7월 | 창비

1.

처음으로 번역된 가이 스탠딩의 글을 접한 한국 독자들은 당황했을 것이다. 적어도 이 글을 쓰는 사람은 그랬다. 「CIG, COAG, COG: 논쟁에 대한 비평」(『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나눔의 집, 2010년).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되던 시점에 그 글은 제목부터 너무 전문적이어서 쉽게 읽을 수 없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 책은 2006년에 나온 “Redesigning Distributi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as Cornerstones for an Egalitarian Capitalism”을 번역한 것이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배를 재구성할 방법으로 기본소득이 더 나은지 사회적 지분 급여가 더 나은지를 놓고 벌인 토론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은 책이다.

가이 스탠딩 글 제목에 나오는 “CIG”란 Citizenship Income Grant, 즉 “시민소득급여”의 약자다. 기본소득이라 봐도 좋다. “COAG”란 Coming-of-Age-Grant(“미래 세대를 위한 수당”)의 약자이며, “사회적 지분 급여 혹은 자산급여 구상”을 말한다. 21세가 되는 국민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자는 기획이다. 이 둘이 논쟁의 두 축이다. 여기에 더해 스탠딩이 주장하는 “COG”란 Community Capital Grant, 즉 “공동체 자산급여”를 말한다.

가이 스탠딩은 CIG와 COAG를 비교할 때는 CIG를 지지하지만, 더 나아가 COG, 즉 “공동체 자산급여”를 새로운 대안으로 주장한다. COG의 예로는 초기의 스웨덴 임금노동자 기금이 있고, 이제 『시대』 독자들에게는 익숙한 알래스카영구기금이 있다. “COG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장, 즉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장이며 실질적인 자산 분배일 것이다.”(276쪽)

2.

가이 스탠딩은 1948년 영국에서 태어나 1977년에 캠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5년부터 2006년까지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활동했고, 특히 후기에는 사회경제보장프로그램Socio-Economic Security Programme을 마련하는 작업의 책임자였다. 그의 글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자주 나오는 이유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나쉬대학Monash University에서 노동경제학 교수 지위도 얻었지만, 2006년부터는 영국의 배스대학University of Bath에서 강의를 했고, 2013년에 런던대학University of London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 인도에서 이루어진 기본소득 실험에 관여해 많은 연구 성과를 냈다. 2015년 영국 노동당 대표 선거에서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이 당선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약력은 BIEN과 관련된 것이다.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창립에 참여했고 공동의장이 되었다. ‘좋다’는 뜻의 프랑스어 ‘bien’을 단체 이름의 약자로 하자고 한 사람이라고 한다(최광은,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011년, 박종철출판사, 190쪽).

그런 가이 스탠딩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한 책을 냈고, 그 책이 얼마 전 한국에서 번역됐다. 한국어판 뒤표지에 적혀 있는 “가이 스탠딩이 말하는 기본소득의 모든 것”이라는 문구가 과장이 아니라 할 만한 책이다. 하지만 그의 다른 책을 먼저 다루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3.

2010년에 나온 가이 스탠딩의 책은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이다. 한국어로는 2014년에 박종철출판사에서 나왔다. (아쉽게도 그 책은 얼마 전에 절판되었고, 이 서평을 쓰는 사람이 그 책의 번역자다.)

“프레카리아트”에 해당하는 어휘는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영어로 하자면 “precarious”라는 단어와 “proletariat”를 단어를 합성해 만든 말이다. 과거의 프롤레타리아트에 계는 안정된 일자리, 강력한 노동조합, 사회보장 따위가 있었다면 그런 것을 상실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처지에 빠진 현재의 노동자계급을 일컫는 말이라 하겠다.

가이 스탠딩은 「서문」에서 자신의 책 제목이기도 한 프레카리아트가 “세상에 나타난 새로운 집단”, 따라서 아직도 “형성 중인 계급”이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그 책은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이다.

197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강조되고 그 결과 “새로운 위험한 계급”인 “프레카리아트”가 등장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주류의 제도와 정책에 의해 형벌을 받고 악마화되는 희생자로서의 프레카리아트”와 “지적 도발과 감정적 도발이 잘 어우러지게 행동하면서 주류의 제도를 거부하는 영웅으로서의 프레카리아트” 사이에 긴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이중의 정체성은 “일관성 결여”의 방향으로 가게 되기도 한다(12쪽). 이에 대한 우려가 가이 스탠딩이 그 책을 쓴 계기일 것이며, 스탠딩의 개입은 책 뒷부분에서 “지옥 정치”와 “낙원 정치”로 나타난다.

어쨌든 가이 스탠딩이 보기에 프레카리아트는 “지구화가 낳은 아이”(19쪽)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자들”의 진단과 처방을 영국의 대처 총리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받아들였고, 이후에는 사회민주주의자들도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 “노동시장 유연화”였다. 유연성은 임금 유연성, 고용 유연성, 직무 유연성, 숙련기술 유연성으로 나아갔고, 그로 인해 여러 불평등이 증가

했고, 산업사회를 받쳐 주던 계급 구조가 무너졌다(20쪽).

그렇다면 프레카리아트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근로 빈민”, “불안한 고용”, “자신의 노동이나 일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사람”, 나아가 “신분 불일치” 등이 프레카리아트와 연관이 있지만(28~29쪽), 스탠딩이 보기에 프레카리아트란 “노동 관련 보장이 결여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전에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있었던 보장이 프레카리아트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프레카리아트에게는 “노동 불안과 불안한 사회소득이라는 문제 이외에도” “일에 기반을 둔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회연대주의 노동공동체의 역할을 느끼지 못”하며, “직업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다.”(33쪽) (이하에서 인용문 안의 강조는 모두 원문에 따른 것이다.) 이 역시 과거의 프롤레타리아트와의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프레카리아트가 균질적인 것은 아니다. “일시적 일자리에 있는 사람 대부분”, “파트타임 근무자”, “하청업자”, “콜 센터 종사자”, “인턴” 등 다양하다. 따라서 “프레카리아트를 바라보는 한 방법은 어떻게 사람들이 바람직한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바람직한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불안한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다.”(42쪽)

“프레카리아트를 바라보는 다른 방법”도 있다. “과정의 측면에서, 곧 사람들이 ‘프레카리아트화되는’ 방식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42쪽) 이제 참으로 암울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프레카리아트화된다는 것은 프레카리아트식 생존 방식으로 이끄는 압력과 경험에 예측된다는 것인데, 그 생존 방식이란 일과 생활 방식을 통해 얻어지는 보장된 정체성이나 발전에 대한 의식 없이 현재를 사는 것” 이란다(42쪽).

그냥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다.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상의 힘들 통제를 없기 때문이다.”(45쪽) 그리하여 프레카리아트는 “네 가지 A”, 즉 “분노anger, 아노미anomie, 걱정anxiety, 소외alienation”를 경험한다.

그렇다면 이런 프레카리아트는 왜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제2장이다. 그러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구적 전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구화 시대(1975~2008)는 경제가 사회로부터 “뿔뿔 나간” 시기이며, 프레카리아트는 그 시기의 정책과 제도 변화 때문에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61쪽). “네트워크 기업과 유연한 노동 관행들의 지구적 생산시스템”이 등장했고, 사회적 보호는 사회 연대가 아닌 근로연계복지workfare로 바뀌었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상품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탈규제”를 입에 올리지만 사실상 “규제”가 다시 강화되었고, 일과 노동이 제조업에서 줄고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제3차산업화tertiarisation”가 벌어졌다. 이런 이유로 불안정한 처지의 사람들 프레카리아트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프레카리아트에 진입하는가?” 저자의 답은 간명하지만 무시무시하다. “사실상 누구든”(127쪽). 제3장에서는 여성, 청년, 고령자, 소수 종족, 장애인, 전과자 등의 처지와 그들이 왜 프레카리아트의 삶을 살게 되는지를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특별히 “이주자migrants”를 프레카리아트화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여기서 이주자란 “국제 이주자”뿐만 아니라 “내부 이주자”도 포괄하는데, 특히 중국이 그렇다.

여기서 저자의 논의는 잠깐 옆길로 샌다. “프레카리아트의 다른 모습 하나” 즉 “시간 통제권 상실”(238쪽)을 일단 고찰한다. 제5장 “노동, 일, 시간 쥐어짜기”에서는 “지구적 시장은 24시간/7일 기계”

(240쪽)가 되었다는 점과 “시간 덩어리”를 단위로 한 “고정된 일터와 고정된 집이라는 관념”(241쪽)이 사라진 점을 지적한다. 그렇게 되면서 노동이 증대되었고, 일자리 찾기 등 “노동을 위해 해야 하는 일”과 돌봄이나 카운슬링 등 “재생산을 위해 해야 하는 일”도 늘어났고, 나아가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접속”이 빈번해지며 “집단적 주의력결핍증후군”이라 할 만한 현상이 나타난다. 여가는 사라진다. 범죄와 마약 복용이 여가를 대신하게 된다.

그리하여 “지옥 정치”(제6장)가 펼쳐지게 된다. 저자가 보기에 현재의 사회는 무엇보다 “파놉티콘 사회”(274쪽)라 할 만하다. 모든 재소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보초가 원형 건물 중앙의 망루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공리주의자 벤담이 그린 “파놉티콘panopticon”이다. 오늘날에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카메라CCTV, 구글스트리트뷰,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이 일상을 감시한다. 학교라고 예외는 아니며, 일터에서는 감시가 더 심하다.

국가는 “자유주의적 후견주의자libertarian paternalist”가 되어 프레카리아트를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치료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국가의 사회정책은 점점 “조건부”가 된다. 국가가 설정한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한에서만 국가수당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빈곤 댕”, “실업 댕”, “프레카리아트 댕”이 등장한다. 나아가 국가는 이주자, 복지수당 청구인, 범죄자, 장애인 등 프레카리아트를 “악마화”한다. 이들로 인해 세금이 허비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앙상하게 되고, 네오파시즘이 등장한다. 청년의 투표율도 떨어지고, 정치인들은 브랜드로서 판매되고, 계급 기반 정치는 사라져 간다. 하지만 프레카리아트를 대표하는 강력한 정치 세력은커녕 이익집단도 아직 없다.

그렇다면 지옥에서 벗어나 낙원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제7장 낙원 정치”는 마치 1848년에 발표된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과 같은 문투다. 물론 주어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라 프레카리아트다. “프레카리아트는 자유와 기본보장을 원한다.”(321쪽) “프레카리아트에게는 사회연대와 보편주의의 에토스, 즉 공리주의자들에 의해 거부된 가치관이 부활되는 것이 필요하다.”(322쪽) “프레카리아트에게 최고로 필요한 것은 경제적 보장”이며 “경제적 보장은 소득 보장이 보증되기만 하면 달성될 수 있다.”(325쪽)

그리하여 등장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이 제안의 핵심은 한 나라나 공동체의 합법적 거주자 누구에게나, 즉 아이들에게나 성인에게나 별것 아닌^a modest 액수라도 월별로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356쪽) “보장 재분배하기,” “금융자본 재분배하기,” “시간 통제권 확보하기,” “공통의 것 회복하기,” “여가 교부금” 등이 기본소득과 연결되어 설명된다. 프레카리아트라는 “세상에 나타난 새로운 집단”(7쪽)과 관련하여 가이 스탠딩이 말한 기본소득은 이런 것이었다.

4.

가이 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를 출판한 뒤, 2014년에는 『프레카리아트 현장A Precariat Charter: From Denizens to Citizens』이라는 책을 냈고, 2015년에는 인도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발표한 『기본소득: 인도를 변화시키는 정책Basic Income: A Transformative Policy for India』의 공저자로 참여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자본주의의 부패: 금리생활자는 번창하고 일은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The Corruption of Capitalism: Why rentiers thrive and work does not

pay』라는 책을 냈다. 그리고 2017년에 지금 다루려는 책이 나왔다.

일단 제목이 간명하다. 『기본소득』. 영어로 된 판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제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A Guide for the Open-Minded”이고, 다른 하나는 부제가 “기본소득이 시행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이다.

저자가 보기에 “현재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지탱할 수 없는 불평등과 불의를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간다(13쪽). 말하자면 “체제를 떠받치는 좀 더 평등하고 해방적인 지지대로서 기본소득이라는 정치적 요구가 생겼다”고 보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14쪽). 『프레카리아트』에서 묘사한 현재의 상태, 즉 신자유주의가 낳은 불평등과 불의의 해결책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찬반론을 독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저자가 밝히는 “이 책의 목적”이다(14쪽). 물론 자신이 생각하기에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세 가지 관점”인 “정의, 자유, 보장”에 대해 설명할 것이고 기본소득의 “경제적 근거”도 논한다.

5.

첫 장 “기본소득: 의미와 역사적 기원”은 저자가 설명하는 기본소득의 총론이다.

기본소득은 이렇게 정의된다. “개인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매달) 지급되는 적당한 금액의 돈 a modest amount of money paid unconditionally to individuals on a regular basis (for example, monthly).”

이제 명칭과 정의에 담긴 구절을 하나씩 설명한다.

먼저 “기본”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완전한 경제 보장이나 풍요가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19~20 쪽) 낮은 수준에서 출발해 점차 높아질 수도 있지만,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든 기본소득은 복지국가를 해체하고자 계획된 수단일 필요는 없으며, 그런 수단이어서도 안 된다.”(21쪽)

정의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보편’이란 무엇인가”도 설명한다. “기본소득이 해당 사회·지역·국가 등에 상시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다(21쪽). 상시 거주와 관련된 자격 여부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에게”(“개별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결혼 여부, 가족 상태나 가구 상태와 무관하게 각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때 성인에게는 “균일하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아동에게는 조금 적게,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조금 많이 지급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을 가리킨다.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소득”), 기본소득을 어디에 쓸 것인지(“지출”),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행위”) 따위와 무관하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22~23쪽).

“정기적으로”(“규칙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된다는 것이며, 이는 소득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철회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 권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와 그 설명에 이어, 저자는 기본소득이 “최소소득보

장”, “음의 소득세”, “세액공제” 따위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나아가 “기본자본급여”라는 “일회성 자본급여”와도 비교한다. “기본자본급여”은 이 글 첫머리에서 소개한 「CIG, COAG, COG: 논쟁에 대한 비평」에서는 “COAG”로 등장했던 것이다. 기본자본급여는 “출발선이 동등한 자본주의”를 표방하지만, “의지의 박약함”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은 한다.

「기본소득의 뿌리」에서는 기원전 461년 고대 그리스의 페리클레스와 에피알테스로부터 시작해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 창립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를 소개한다. 「이름에 들어 있는 것은?」 쪽지에서는 사실상 같은 제도의 여러 명칭을 소개하는데, 저자는 “기본소득basic income”과 “사회배당 social dividend”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고 한다 (40쪽).

저자는 세간의 오해를 의식하고 이렇게 강조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일이 일부 논평자들의 주장과 달리, 기존 다른 국가 수당의 전부나 일부를 자동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다른 국가수당을 대체하든 그렇지 않든 오히려 새로운 분배체제의 바람직한 기반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본소득은 ‘복지’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소득이다.” (41쪽)

사실 그동안 기본소득을 가장 간명하게 설명한 글은 이 글 서두에서 언급했던 『분배의 재구성』에 실려 있는 벨기에 루벵대학교 교수 필리페 반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의 「기본소득: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가이 스탠딩의 저서가 나오면서 그 첫장이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 같다.

6.

첫 장이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한 설명이라면, 이어지는 장들에 서는 저자의 독자적인 견해가 극명하게 표현된다. 어떤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밝히기도 한다.

두 번째 장 “기본소득과 사회정의”는 “기본소득을 윤리적 혹은 철학적으로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이다. 저자가 보기에 “경제적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안착시키는” 근거는 세 가지다. “사회정의,” “자유,” “경제적 보장.” 그런데 저자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사회정의”(45쪽)이어서, 사회정의를 이 장의 주제고, 나머지 두 근거는 이어지는 두 개의 장의 주제가 된다.

“사회정의”라는 근거를 역사적으로 제시하면서, 제일 먼저 토머스 페인의 논의가 소개되고, 이어서 “헨리 조지의 유산”이 소개된다. 나아가 사회정의 실현과 관련하여 “조세 정의,” “정의의 인구통계학,” “생태적 요청,” “시민권의 강화” 등을 언급하는데, 이 모두 기본소득과 연관이 있다.

세 번째 장 “기본소득과 자유”는 “기본소득에 대한 두 번째 정당화” 논거에 대한 설명이다. 즉 “기본소득이 자유를 증진하고 자유에 실체를 부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고찰이다(71쪽).

여기서 저자는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유와 “공화주의적 자유”를 구분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작은 국가’를 옹호한다. 반면에 공화주의적 관점에서는 자유란 ‘비지배’일 뿐, 공화주의적 자유는 정부를 필요로 하며 정부에 의존한다. 나아가 “공화주의적 의미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

의 선호나 견해가 무엇이든 스스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 있어야 한다.”(82쪽) 가이 스탠딩은 여기서 기본소득을 공화주의적 자유와 연결시킨다. (이 문제에 대해,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비 지배 자유’ 개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논의도 있다. 금민, 「공화주의적 기본소득론의 한계와 공유부 배당」,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2018년 6월 22일.)

공화주의적 자유와 기본소득을 연결시킨 뒤, 가이 스탠딩은 “자유를 위한 정책 원칙”(85쪽 이하)을 제시한다. 사회정책은 가부장주의가 아니어야 하고 자선이 아닌 권리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을 권리로 볼 때 제기되는 문제는 이런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87쪽)

여기서 가이 스탠딩은 주춍한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기본소득은 영구적인 것으로서 헌법의 권리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번 수립되면 이 권리는 빼앗기지 않는 것이 된다고 할 때, 이상적인 주장은 기본소득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런 주장은 실험 자체를 막거나 자격, 지급 수준, 기타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임시적 성격의 기본소득 혹은 부분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막을 것이다.”(88쪽) 그리하여 “예컨대 5년간” 같은 “단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순수주의자들”에 저자는 반대한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기본소득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가이 스탠딩이 물러서는(또는 주춍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일반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태를 걱정한 것일까? 아니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자체를 무언중에 발설한 것일까? 말하자면 자

분주의와 기본소득이 양립하기 어려움을 달리 표현할 것일까?

이 책의 네 번째 장 “빈곤, 불평등, 불안정의 감소”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다루고 있고, 다섯 번째 장은 제목 그대로 기본소득의 “경제적 논거”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소득의 효과라고 제시되는 것은 예측이거나 파일럿(시범 시행) 프로그램의 결과다. 아직 지구에는 국가 단위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수급자에게 낙인을 찍거나 이들을 탄원자로 만들지 않으면서”(100쪽) “빈곤의 덫”과 “불안정의 덫”을 줄일 것이며(101쪽), “충격이나 우연한 위험 때문에 개인, 가족의 재정위기가 가속화될 불확실성과 개연성을 줄여 줄” 것(114쪽)이라는 주장 따위는 모두 추론이거나 일정 지역에서의 단기간의 시범 시행의 결과다. “경제적 논거” 장에서 말하는 “더 높고 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경기순환을 안정화하는 효과, 파괴적인 기술변화에 따른 대규모 실업의 방지”(123쪽) 따위는 좁은 범위에서의 파일럿의 결과와도 거리가 먼 추론이다.

이어지는 두 개의 장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을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옹호한다.

여섯 번째 장(“표준적인 반대”)에서 저자가 소개하는 열세 가지 “표준적인 반대”는 이런 것들이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러한 반대에 대한 스탠딩의 반론이 궁금하면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라. “기본소득은 유토피아적이다: 이전에는 없던 것이다.” “기본소득은 감당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기본소득은 ‘완전고용’ 같은 진보적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빈민이 현금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빈민만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돈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기본소득은 사

람들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배즈’를 더 많이 소비하게 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일을 줄일 것이다.” “기본소득은 임금을 낮출 것이다.” “기본소득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민 유입을 유인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총선을 앞둔 정부에 의해 조작될 것이다.” 이 가운데 윤리적인 것 몇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반론은 입증된 바 없는 것이다. 국가 단위로 자체적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에 대한 저자의 반론도 입증된 바 없기는 마찬가지고, 그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저자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일곱 번째 장 “감당가능성이라는 쟁점”에서 기존의 보조금을 줄이고 세금 감면을 축소하고 세율을 높이는 이외에 “국부펀드, 탄소세, 금융거래세”(173쪽)를 도입하는 것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그 장의 마지막 꼭지 제목이 말하듯 “감당가능성은 정치적이다.” “결국 감당가능성이라는 쟁점은 사회가 사회정의, 공화주의적 자유, 경제적 보장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186쪽)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정치적이려면 도입 여부 역시 정치적 일 것이다. 이 점이 어려움이다.

7.

여덟 번째 장 “일과 노동에 대한 함의”는 일work와 노동labour을 구분했던 『프레카리아트』에서의 논의를 다른 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로 더해진 것은 “기본소득은 일을 줄이는가 아니면 늘리는가?”(193쪽)라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도 논리적 추론

(194쪽)과 파일럿 프로그램의 결과를 이용해 구성된다. “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노동공급을 줄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늘리는 사람도 있으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198쪽) 기본소득이 “일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다.”(199쪽)

아홉 번째 장은 기본소득은 아니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대안들”을 검토한다. 그런 것으로는 “법정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사회보험 혹은 국가보험,” “자산조사 사회부조,” “식량 보조와 바우처,” “일자리 보장,” “워크페어,” “세금공제,” “유니버설 크레디트,” “음의 소득세,” “사적 자선” 같은 것이 있다. 저자가 보기에 물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회정의의 원칙에 거의 부합하지 않는다.”(251쪽)

열 번째 장은 “기본소득과 개발”이다. 여기서는 “현재 대부분 ‘빈민’을 타깃으로 하는 현금이전 제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현금이전 제도가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을 잠재적으로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네 가지 요인이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본다. 타기팅, 선별성, 조건성, 무작위성이 그것이다.(256쪽). 빈민에게만 현금을 주고, 일부 집단을 우선하고, 수급자의 행위에 조건이 붙고, 무작위로 구성된 집단에 대한 실험만으로 정책이 도입되고 하는 등 현재 여러 정부가 보이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 제도가 완전히 무용한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의 조건부 현금이전과 무조건적 현금이전에 대한 많은 연구가 밝혀낸 결과”는 “소득 빈곤의 의미 있는 감소, 식량 및 영양공급 지출의 증가, 학교 결석 감소, 인지 개발의 개선, 더 많은 의료서비스 이

용, 특히 가축과 농업 자산의 투자를 위한 저축, 약간의 지역경제 성장 등”이다(266쪽).

“타깃이 있고 선별적인 조건부 현금이전”과는 달리 “1장에서 정의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기본소득을 실험하기 위해 설계된” 파일럿은 두 개가 있었다(267쪽). 하나는 2008~2009년 나미비아의 한 마을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09~2013년 인도의 자영여성협회가 조직한 파일럿이다. 물론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저자는 알고 있다. “장기적 혹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 혹은 ‘단기적’이었다는 점”이 “명백한 한 가지 한계”(267쪽)였다고 한다. 이는 시범 시행 자체가 지닌 한계이지 해당 실험의 한계는 아닐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겠다.

그리고는 이 두 차례 실험의 성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소개한다. 나미비아에서는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되어 학교 출석률이 크게 올랐고, 사소한 절도 따위의 범죄가 줄었다(268쪽). 인도에서는 위생, 영양 공급, 건강, 의료, 출석, 교육 효과 등이 개선되었고, 사회적 공평이 향상되었고,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과 노동이 증가했으며, 부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273쪽) 있게 됐다. “기본소득 파일럿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적은 금액이라도 보장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274쪽)

나아가 저자는 인도와 나미비아와 같은 “저소득 나라들” 역시 기본소득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런 “개발도상국에서”(274쪽) 가능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 네 가지를 제시한다. 증세, 공공지출의 전환, 국부펀드, 기부가 그것이다. 그런 뒤에 최근 중동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부유한 나라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기본소득 체

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283쪽)고도 말한다. 뒤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기부”를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의 하나로 언급하는 저자의 주장은 수증하기 어렵다.

“11장 기본소득 이니셔티브와 파일럿”에서는 2016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졌던 발의부터 과거에 진행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실험을 소개한다. 물론 저자도 파일럿 대부분이 “진정한 기본소득”을 위해 설계되지는 않았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298~299쪽).

눈에 띄는 것은 그 장 마지막 쪽지 “파일럿 이후는?”이다. 여기서 저자는 “기본소득 파일럿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한다. “주로 사람들의 행위와 관련한 주장과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을 검증하고,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315쪽).

좌측통행이 좋은지 우측통행이 좋은지를 검증한다거나 버스전용차로가 차량 소통에 도움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종류의 것이라면 시범시행, 또는 안내용 시행 곧 파일럿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면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지 의문이다. 명백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곧 한쪽의 부가 다른 한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실험을 통해 설득한다?

문제가 그것만은 아님도 저자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의상 파일럿은 단기적인 변화일 뿐이다. 이에 따라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변화가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것이 될 경우 효과가 달라질 것인가? 파일럿이 끝난 후에 효과가 사라지거나 심지어 반대효과가 나올 수 있는가?”(315쪽) 이제까지의 실험이 단기간에 끝났으므로 당연히 “이 문

제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적 자료는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

하지만 저자는 파일럿을 옹호한다. 거의 ‘집착’ 수준이다. 이 책의 부록은 아예 “기본소득 파일럿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그 항목은 이렇게 많다. “지급은 반드시 적절한 기본소득이어야 한다.” “파일럿 설계는 명확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설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파일럿의 규모가 충분히 커야 한다.” “기간이 충분히 길어야 한다.” “파일럿은 다른 곳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하며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무작위 통제집단을 이용해야 한다.” “기본 조사를 해야 한다.” “정기적인 평가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핵심 정보원을 이용해야 한다.” “다층적인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태도효과와 행위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파일럿을 시작하기 전에 가설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비용과 예산이 현실적이어야 한다.” “샘플이 가급적 불변해야 한다.” “이전 메커니즘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행위자 혹은 ‘목소리’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안내서인지 기본소득 파일럿을 시행하기 위한 안내서인지 잘 모르겠다.

11장의 결론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파일럿을 통해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검증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 해도 적절하게 설계되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317쪽) 앞서 315쪽에서는 “기본소득 파일럿의 목적”으로 “주로 사람들의 행위와 관련한 주장과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을 검증하고,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결국 파일럿이란 정당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 정치적 지지와 관련된다는 주장이다. 반대자들을 설득해 제도로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일정 지역의 거주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 책의 영어판 부제인 “기본소득이 시행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12장은 “정치적 도전: 여기서 시작해서 어떻게 그곳으로 갈 것인가”다.

“오늘날 기본소득 체제를 시행하는 데 주된 걸림돌은 경제나 철학이 아닌 정치적인 부분이다.”(321쪽) 그래도 기본소득을 정책에 포함하는 정당이 늘어나고, 여론조사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으며 “기본소득 같은 아이디어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치적 요청이 되었다.”(330쪽) 저자가 제시하는 답은 “여기에 더 나은 미래를 그려 보는 상상력의 도약이 필요하다”(333쪽)라는 정도다. 그리고 “‘혁명’이 아니라 진화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338쪽)라고 덧붙인다.

8.

이제까지 시행된 기본소득과 관련된 제도 또는 실험 가운데 가이 스탠딩이 첫 장에서 정의한 것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알래스카영구 기금 프로젝트뿐이다. 그것은 파일럿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착된 제도다. 많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파일럿 프로그램에 상당히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수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출석률 증가, 건강 증진 등 해당 주민들의 삶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변화했다는 파일럿 프로그램 결과는 그러한 변화가 그저 ‘소득 증가’ 때문인지 ‘기본소득’ 때문인지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통해 얻는 소득이 증가했든 기본소득이 더해졌든, 정기적이고 개별적인 소득이 향상되면 누구든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이제까지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소득 증가 효과가 아닌 기본소득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이제까지의 파일럿 프로그램 가운데 상당수는 기본소득이라 볼 수 없다. 매니토바에서 있었던 ‘민کم’ 실험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음의 소득세’였다. 나미비아의 경우에는 60세 이상만 제외되었지만, 인도의 경우에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족만 대상이었다. 얼마 전에 중단한 핀란드에서의 실험도 사실상 실업수당을 다른 것으로 바꾼 것이고 임금 보조금일 뿐이다. 이런 식의 조건부 정책을 실현한 결과가 기본소득의 효과로 설명되어서는 곤란하다. 그저 소득 증대의 결과라 보아야 한다.

셋째,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하려면 시행 단위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제까지의 실험 가운데 상당수는 외부 기금으로 진행되었다. 나미비아의 경우에는 재단과 개인 기부자에게서 기금을 모아 실시했고, 인도의 경우에는 유엔개발계획과 유니세프에서 기금을 출연했다. 케냐에서 있었던 기브다이렉틀리의 실험은 사실상 원조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재원이 마련된다면 지속 가능 여부는 외부 사정에 달리게 될 것이고, 그 효과는 기본소득의 효과가 아닌 ‘기부’로 인한 소득 증가의 효과일 수 있다. 외부 재원에 의한 실험은 기껏 현물 지원보다는 현금 지원이 더 큰 효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재원이 그랬기에 실험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집단을 상대로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시행하는 실험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실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과연 그동안 삶이 편안할 수 있을까?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아마도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던 시절이었다면 다른 논지를 펼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2017년에 나온 이 책에서의 스탠딩 논지는 조금 궁색하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기본소득(아니면 기본소득 ‘파일럿’이라도!)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넣거나 설득하자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국민을 설득하자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짜자는 것이다.

2018년 6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 관련 워크숍에서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부대표 다비드 카사사스David Cassassas가 현재의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던진 질문이 생각한다. “보통선거를 실험해 보고 도입한 국가가 있었는가?”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수립하자는 운동에서는 ‘혁명’이 답이었다. 사적 소유의 철폐와 같은 기획을 집권 세력이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니, 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권력을 잡아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참으로 입 밖에 내기도 어려운, 동조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발상이다.

저자는 “진화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338쪽)라고 말하지만, 혁명보다 진화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부제를 살짝 바꾸어 저자와 우리

* 어떤 연구자는 기본소득 실험들이 지닌 한계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정리하기도 한다. 1) 실험들은 기간 상으로 제한된다. 2) 실험들은 범위상으로 ‘보편적이지’ 않다. 3) 실험들은 순기여자들을 배제한다. 4) 기존의 실험들은 저소득 인구집단들로 제한된다. 5) 실험 참가자들은 이미 노동 문화에 익숙한 ‘성년이 되었다.’ Kate McFarland, “UBI’s Impact on Work Culture: Not a Question for the Experimenters,” 2018. (이 글을 번역하여 널리 알려진 이견민 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모두에게 묻고 싶다. “Basic Income. And How Can We Make It Happen?”
 (“기본소득.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시행되도록 할 수 있을까?”)

시디